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Ⅲ)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김 종 천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6-20-②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I)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김 종 천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I)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Research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uture Industries [III]
-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Industry to Respond to
New Climate System -**

**연구자 : 김종천 연구위원
Kim, Jong Cheon**

2016. 9.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로 인하여 협정문의 주요내용으로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했다는 점과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점검을 국제사회에 받아야 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징임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 및 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음
-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반 구조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공업 분야, 즉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부도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산

업구조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 빌딩사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음

- 본 연구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발전 법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누구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분석,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위한 법제도 분석, 셋째,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음

II. 주요 내용

- 해외 국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동향
 -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EU국가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 및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음

- 이미 독일은 건물부문에 에너지효율향상과 운송부문에 전기자동차 확대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가 프로젝트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 특히, 2016년 4월에 이미 일본은 전력판매부문에 민영화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대한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에너지생산플랜”에 따라 조명기기와 중형자동차 에너지효율향상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제, 점업금지, 전기의 공급약관, 구역전기사업허가, 전력거래 및 전력구매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에너지이용의 합리적인 시책, 폐열의 이용관련 법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의 사업허가, 열공급규정의 신고,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공급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의 법제도를 분석하였음
- 그러나, 개별 법률상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적인 규제수단이 입법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에너지신산업 발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관련하여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이웃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였고, 또한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상 “소규모전기공급사업”에 관한 개정안을 분석하였음
- 이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규정을 분석하였음
- 그러나, 전기충전사업에 의한 전기를 재판매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전기충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인지, 송배전사업자인지, 전기판매사업자인지에 대해 구별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로 포섭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신사업”의 개념 속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포섭하고 있고,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에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즉 기피시설, 혐오시설, 기타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진, 부가가치 창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임

- 즉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로는 불가능하며, 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형에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주민들에게 상용하고 남은 전력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는 “(가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사업, 지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지정 및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지원센터의 지정,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종국적으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즉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에너지신산업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의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통계의 조사 및 작성,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 취소,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지원 등,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 하였음

Ⅲ. 기대효과

-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新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정부의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정부의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게 해줌으로써 다가올 미래에는 대규모 추종형 발전방식의 에너지사회에서 분산자원 에너지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함
- ▶ 주제어 : 에너지신산업, 에너지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aris Agreement concluded in Paris on December 12, 2015 is a new climate change agreement for the years beyond 2020. The Agreement requires all countries to mandate their targ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o get checked their progres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ry five years from 2023. It also requires countries to raise 100 billion dollars of fund every year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by 2025.
- Keeping the pace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Korean government has submitted its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by 2030. The government set its target to reduce BAU by 37 percent by 2030.
-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s its policy to grow energy-related industry for the new era of climate change regime. The energy-related industry includes demand side resources trade market, energy storage system (ESS),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energy self sufficient island project, sola power lease, zero-energy building projects and so on.

- This research makes analysis first, on laws and policies that expands energy prosumer which means anyone can produce energy by themselves and sell the leftover of energy after they consumed. Second, analysis on laws and policies on an electric car industry, and third analysis on new energy industry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facilities. The research concludes with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II. Main Content

- Trend of New Energy Industry overseas
 - EU member countries, US, China, Japan and Australia also focus on developing innovative models of new energy industry such as new renewable energy and battery cars.
 - Germany has adopted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and expanding electric cars for transportation sector. Germany plans to confirm the project for greenhouse gas-neutral country by 2050.
 - Japan has privatized its electric power sector in order to expand new energy industry in April 2016, while Australia has established policies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of lightings and medium-sized cars in accordance to its ‘national energy production plan’.

Analysis on Domestic Law and Policy Related to New Energy Industry

- The analysis was made on the current Electric Utility Act, specifically on the permission of electric business, the prohibition of concurrence,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lectricity supply, the permission on the district electric business, and the electric power trading and the policy for it; on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specifically on the measures for efficient use of energy, financial and taxation support, rational policy for energy use, and utilization of waste heat; on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specifically on business permission on integrated energy, report on the provisions on heat supply, and conditions of heat producer';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pecifically on mandatory use and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certification, and obligation to blend new and renewable energy fuels.

- This paper finds that there is a limit to nurture demand-recourses trading market, energy storage system, eco-energy town, energy self sufficient island, battery lease project, solar power lease project, zero-energy building project and so on due to the regulations in place.

A Way to Improve Legislations on New Energy Industry

- This paper analyzes 'instructions on trade including small-sized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promote 'electricity

trade between neighbors' as a way to encourage 'energy prosumer' in the new energy industry. It also analyzes the draft amendment of 'small-sized electricity supply business' under the Electric Utility Act.

- Another analysis this paper carries out is on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al-friendly motor vehicle charging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determining on issues of the dissemination of e-motor vehicles and re-sell of electricity by a charging facility entity.
- There is an issue regarding charging service provider for electric motor vehicle and demand-management provi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5) of the Electric Utility Act. The recently proposed draft on the Act includes electric motor vehicle charging service in the new energy industry and requires a charging service provider to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facility can be promoted by allowing local residents to share a certain portion of the participation run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electricity produced at an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facility should be used for the local residents and the power generators should be allowed to purchase the leftover of the produced electricity.
- The industrial convergence in response to the new era of climate change will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HG emissions and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nd eventually creating new

growth engine and creating jobs. Such benefits ultimately result in the proposal of the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provides for the purpose, definitions of new energy industry, relationship to other Act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of setting up a platform for new energy industry, registration policy for new energy business entity, new energy industry committee, special provisions on electricity trade, cre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y, and cancellation and support thereof, fund raising, and mandatory installation of charging facility, etc.

III. Expected Effect

- With the draft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this research promotes consistent and sustainable policy to grow new energy industry for the new era of climate change regime.
-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legal and legislative reference to back up “the growth strategy for 2030 new energy industry” of the government.
- With proposing the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the research contributes to search for a new growth engine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le mitigating

GHG emissions and to creating new jobs for the citizens. This will encourage the change into distributed generation from the current demand-following generation.

▶▶ Key Words : New Energy Industry, Energy Prosumer, Electricity Trade between Neighbors, Environmental-Friendly Motor Vehicle Charging Facilities,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y, Special Act on New Energy Industry (t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3
제 2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해외 국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 동향	27
제 3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33
제 1 절 현행 「전기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33
1.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자” 관련 허가제도	33
2.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겸업금지제도	35
3.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의 공급약관” 관련 법제도	36
4. 현행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 관련 법제도	37
5.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 및 “전력 구매” 관련 법제도	39
제 2 절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4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41
2.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42
3. 에너지이용의 합리적인 시책	42
4. 폐열의 이용	43

제 3 절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념	44
2.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44
3. 열 공급규정의 신고 등	45
4.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46
5.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47

제 4 절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입법목적	48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개념	48
3.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49
4.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	50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52
6.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54

제5절 소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적 한계

제 4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발전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제 1 절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에너지프로슈머의 개념	59
----------------	----

2. 현행 「전기사업법」상 “이웃간 전력거래” 가능한지 여부 분석	60
3. 에너지프로슈머 중 “이웃간 전력거래” 사례 분석	62
4. “이웃간 전력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64
5.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상 “소규전기공급사업” 개정	70
제 2 절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74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74
(1) 실제 화석에너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의 한계	74
(2)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75
2. 전기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법제개선 방안	82
(1)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가능 여부	82
(2) 정부주도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의 개정(안)	83
제 3 절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87
1.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개념	87
2.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사업유형	88
3.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통한 “전력거래” 가능여부	89
4.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활성화를 법제개선 방안	90
제 4 절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향	92
1.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필요성	92
2.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	94

(1) 목 적	94
(2) 정의규정	95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97
(4)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	98
(5)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100
(6) 에너지신산업위원회	100
(7)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특례	103
(8)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104
(9)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	107
(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108
(11) 기타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규정	110

제 5 장 결 론	111
------------------------	------------

참 고 문 헌	115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열 등의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와 더불어 인류사회를 형성하고 계속 유지시키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삶과 궤를 같이한 에너지의 변천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안정된 전력공급으로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의 위치를 선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에너지 체계는 문명의 조직 방식, 상업 및 무역의 결실에 대한 분배방식, 정치권력의 행사방식, 사회적 관계의 관리방식을 결정할 것이며,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대, 즉 에너지의 생산 및 분배의 통제 중심의 분산주의 시대(Distributed Capitalism)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¹⁾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인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산업부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오던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39.3%), 원자력발전소(30%), LNG 발전소(20.4%) 등 추종형 중앙집중식 발전시설들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²⁾을 통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으

1) 제러미 리프킨/안진환(역), 『3차 산업혁명-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민음사, 2012), 159면.

2)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로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정책변화가 현실화 되면 실업유발, 세수부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외상황을 볼 때 오일국가와 가스국가들은 처절하게 치킨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각 국가들마다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설키고, 에너지는 점점 더 무기화되고, 국가들 간에 갈등의 불씨를 초래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을 공식 발표하여 “新氣候體制”를 공식 출범시켰다. 협정문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둘째, 국가별 기여 방안(INDC)을 5년마다 스스로 정하여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이행점검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시하며, 셋째, 모든 당사국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³⁾는 것이었다. 이처럼 파리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도국과 선진국가들이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했다는 점과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점검을 국제사회에 받아야 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정부는 2015년 6월에 2030년까지 경제성장 및 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지만, 우리나라의

(ICT)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http://www.energynewbiz.or.kr/energy/intro/intro>), (2016. 7.25.최종)

3) 조환익, 『電力投球』(알에이치코리아, 2016), 159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공업 분야, 즉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⁵⁾,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⁶⁾

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7>,(2016. 7.25.최종).

5) 미국의 미래학자 토니 세바는 2030년경에 연간 8조원 규모의 화석에너지 관련 산업이 붕괴할 것이며, 100년이 넘는 내연 기관이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에 의한 산업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토니 세바/박영숙(역), 『에너지혁명 2030』(교보문고, 2016), 21-22면.

6)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기업들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5470억원, 에너지저장장치에 1조3566억원, 마이크로그리드에 2961억원, 제로에너지빌딩에 717억원, 수요자원거래시장에 958억원 등 2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시장을 창출함에 따라 2020년까지 정부도 42조원을 투자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529191>(2016. 7.25.최종).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목표>⁷⁾



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0047>(2016. 7.25.최종).

그러므로 본 연구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발전 법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누구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분석,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⁸⁾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위한 법제도 분석, 셋째, 혐외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를 위하여 EU국가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에너지신산업 관련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책을 분석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로 현행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법제도 분석을 하였으나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향후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방안으로 첫째, 에너지프로슈머 정책인 이웃간 전력거래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관

8)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인류의 발전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바, 제1의 시기는 농업혁명, 제2의 시기는 산업혁명, 제3의 시기는 미래산업으로 굴뚝산업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노동자와 교통 및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는 “미래첨단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미래첨단산업으로 전기자동차가 최적화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지금처럼 제3세계의 저임금·비숙련 작업장에서는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를 조립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찰스 모리스/ 엄성수(역), 「테슬라 모터스·일론머스크,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을유문화사, 2015), 43-44면.

런 법제 개선방안, 셋째,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설치를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넷째, 이러한 개별법령 개정을 통하여 법제 개선방안으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하는 부문에 대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독립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EU 국가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자료 분석을 통한 文獻的이고 立法學的인 研究方法論을 채택한다.

연구의 범위는 제2장에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U국가 및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의 경우 미래 에너지관련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육성하는데 법제도적인 한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적시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에너지프로슈머 관련 “이웃간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넷째, 특히, 우리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제출함에 따라 기존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공업산업 부문을 정보통신기술

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구축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⁹⁾ 제5장에서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관련 내용을 요약 및 정리를 하였고, 사견으로 종래의 에너지법제인 「전기사업법」 개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안)”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9) 이투뉴스, [칼럼] “온실가스감축의 효율적 이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법의 특별한 만남”, 이종영,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7>(2016. 7. 28. 최종)

제 2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해외 국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 동향

총래의 “교토체제”하에서는 선진국들의 중심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기후협정이었다면,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간에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감축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EU등의 해외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 가정, 운송 등의 부문에 대하여 2030년까지 과감한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이다.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활성화 등 2030년까지 총 1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수송·산업·빌딩분야의 에너지효율향상에 8조3000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4억 달러의 투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⁰⁾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6~28%로 자발적 감축방안을 마련하였는바, 1차적으로 2020년까지 17%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2차적으론 2025년까지 26~28%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¹¹⁾ 특히,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강구하고, 천연가스 등을 통하여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¹²⁾ 최근 미국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을

10) <http://m.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65>(2016. 7. 28. 최종)

11) 변천석,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에너지포커스』2016 봄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16/4), 6면.

12) 변천석, 앞의 논문, 6면.

마련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촉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은 수송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100만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연간 550~9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유해환경오염물질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⁴⁾

중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까지 축소하기로 하는 자발적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자발적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100GW 및 풍력발전 200GW에 해당하는 부문을 구축하여 비화석연료 20%, 전국 산림 복구 지역을 45억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천연가스의 비중을 10%로 확대, 전기자동차 500만대 보급 및 전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83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¹⁶⁾

일본도 자발적 감축방안으로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로 줄이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의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 및 에너지효율개선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 이후에 에너지효율정책 및 에너지절약 등을 통하여 산업, 가정, 수송 등의 부문에서 저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¹⁷⁾,

13)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34/pdf/issue_116_all.pdf. P. 7. 미국은 2015년 12월 18일에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개정을 통하여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 적용기간을 2016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30~10%까지 줄어나갈 예정이다.

14) 변천석, 앞의 논문, 6면.

15)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536.pdf>. P.4.

16)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536.pdf>. P.4.

17) 일본정부는 기업이 고효율에너지기기를 도입할 경우에 설비비를 최대 50%로 14

태양광 발전¹⁸⁾ 총 68GW 규모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스마트미터기 설치를 2017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¹⁹⁾ 최근에 일본은 전력판매부문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방과 전력요금을 자유화 정책을 마련하여 신규사업자인 신전력사업자 등장과 라쿠텐, 도쿄전력과 소프트뱅크, 지자체 등도 전력과 통신 및 가스, 숙박 등의 결합을 통하여 전력요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오사카가스는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도시가스 고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중개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EU도 자발적인 감축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대비 40%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로 삼고 있는바,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에 50억 유로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47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²⁰⁾

독일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를 202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²¹⁾ 에너

역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터리 충전 시설 등 외부에 도입할 경우에 486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일본제철, 고베제강 등 6개 철강 기업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3년간 1224억90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128470) (2016. 7. 28. 최종)

18) 일본의 미야기현에서는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가동하여 주택 85채, 주변병원과 공공시설을 연결하여 태양광발전과 대형 배터리를 전원으로 스스로 전력을 발전하여 소비를 실현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으로 57억 3,340만원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전력 판매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www.nikkan.co.jp/articles/view/00390151>)

19) <http://m.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65>(2016. 7. 28. 최종)

20)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95>;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인 태양광과 풍력 등을 통하여 전체 전력량 59.1%를 공급하였고, 노르웨이는 전기자동차 판매율이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417미터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겠다.(2016. 7. 30. 최종)

21)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독일은 에너지패키지법을 발표하였는바, 원자력법에 2022년까지 모든 원전 단계적으로 폐지, 전력망확대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집중된 북부지역과 산업시설이 밀집된 남부지역간에 전력망 연계 및 확대, 재생에너지법에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 대한 FIT 지원금 인상, 에너지산업법에 송전시스템 세분화, 전력망 운영사업자간 전력망 공동구축 의무화, 에너지기후

지전환(Energiewende) 및 온실가스 목표를 수립하였는바,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대비 2020년까지 40%,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0~9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²²⁾, 2013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변경하였고, 2014년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시범적으로 태양광발전예 경쟁입찰방식의 운영을 통하여 2017년부터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²³⁾ 2014년 재생에너지법(EEG)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던 FIT 및 각종 보조금 킬로와트당 17유로에서 2015년 신규사업자부터 킬로와트당 12유로로 축소하였고, 둘째, 기존의 자가발전소비자에 대하여 FIT 부과금 감면제도를 계속유지하고, 신규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설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하고, 셋째, 녹색전기면제제도 폐지,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송전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판매 의무를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²⁴⁾ 이처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확산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2014년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으로 FIT 지원금과 FIT 면제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즉 독일 정부도 FIT지원 정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에너지효율향상 및 전기자동차

변화기금법에 거래 수익을 기금에 적립, 원자력폐지,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후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개발에 사용, 기후목표와 양립가능한 도시지방 개발강화법에 도시 및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사용 확대, 해상풍력 발전 설비 강령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승인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송용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16-04」 (한국경제연구원, 2016/3), 7-8면.

22) http://deu-bonn.mofa.go.kr/korean/eu/deu/policy/energy_water/index.jsp(2016. 7. 30. 최종)

23) 송용주, 앞의 논문, 12면.

24) 송용주, 앞의 논문, 13면.

개발, 전력망 통합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는 자발적 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로 줄이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달성케 하고, 2018~2019년에 탄소배출량감축펀드(Emission Reduction Fund: ERF)로 3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²⁵⁾ 또한 호주 정부는 “National Energy Productivity Plan”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조명기기와 중형자동차량에 에너지효율을 40% 개선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²⁶⁾

이처럼 EU국가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 및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독일은 건물부문에 에너지효율향상과 운송부문에 전기자동차 확대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가 프로젝트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2016년 4월에 이미 일본은 전력판매부문에 민영화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대한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에너지생산플랜”에 따라 조명기기와 중형자동차 에너지효율향상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부도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및 새로운 에너

25)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95>(2016. 8. 3. 최종)

26) 고혜진, “호주연립정부 기후변화정책현황 및 평가-2015 INDC 제출안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5-42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15/11.20), 17면.

지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규모 집중형 방식의 발전시설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최고기술헌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프로슈머,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기자동차 확산, 울릉도 및 가파도 등 에너지자립섬에 에너지신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이웃 및 기업들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프로슈머 확산정책,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스마트미터기 보급,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로 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책을 포함하여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적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신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면서 신에너지산업을 육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에너지법제, 즉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법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특수성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제 1 절 현행 「전기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자” 관련 허가제도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전기”라는 것은 물과 같이 공익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구분하게 되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동법 제2조제3호),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동법 제2조제5호),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동법 제2조제7호), 전기판매사업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이처럼 전기사업을 종전에는 일반전기사업, 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

여 한전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체제를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으로 구분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구역 또는 특별공급구역, 공급전압,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에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설치장소, 설비용량, 원동력의 종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미리 제53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동법 제7조제2항). 이처럼 국가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제도를 입법화한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공익설비이기 때문에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둘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셋째,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넷째,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다섯째,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

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여섯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객관적인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기사업에 대한 착실한 계획대로 수행요구를,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중복으로 설치시에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를 위함과 일정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함과 아울러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겸업금지제도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는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첫째,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둘째,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셋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면서 원칙적으로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금지규정”을 예외적으로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겸업 금지제도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사업자,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여 이동을 시키는 송·배전사업자, 이동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전

기판매사업자로 서로의 영역을 획정함으로써 업역을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즉 발전사업자는 송·배전사업, 송·배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을 전기판매사업은 발전 및 송·배전사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울릉도 등의 도서산간지역, 집사법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다는 하겠다.

3.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의 공급약관” 관련 법제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에 “전기판매사업”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이때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용가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전기공급계약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포섭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수의 소비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건수마다 수고로움과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²⁷⁾,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인가를 하여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으로 첫째,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둘째,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셋째,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넷째,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 16조제2항).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제4항). 이처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급약관, 즉 기본공급약관 및 선택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제5항).

따라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의 공급약관” 관련 규정을 분석해 보면,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발전, 송·배전비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관련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불평등하게 전기사용자에게 약관을 맺어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4. 현행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 관련 법제도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전기사업자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제1항에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첫째,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둘째,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셋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31조제3항에서 “구역전기사업자는 (i)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ii)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iii) 제5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0일에 “구역전기사업”의 개념과 집단에너지사업 중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특정구역내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일괄 판매할 수 있으며, 전기는 남거나 부족한 건지를 전력시장(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이는 분산형 전원의 개발과 대규모발전소 부지확보를 해소함과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를 도입하게 되었다.

5.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 및 “전력 구매” 관련 법제도

현행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등 (i)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제2항). 이처럼 자가용으로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력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자기의 전기수요량에 충당하기 위한 발전을 하는 자로써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간 전력 생산 50% 미만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31조제4항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i)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 (ii)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i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

업자, (iv)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v)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등)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특례를 인정받아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이유는 분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단가가 높아 전력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보호하여 다원화된 발전자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분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판단된다.

이어서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14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다. 이른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전력의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현행「전기사업법」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

기사용자에게는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종래에는 수전설비 용량이 “5만 킬로볼트암페어”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게는 직접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이처럼 전기사용자의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바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사용자의 선택권 확대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 2 절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i)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ii)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iii)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i)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설비의 대체, (ii)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iii)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iv)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v)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vi)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vii)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업체,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에너지관련 연구개발사업, 기술지도사업, 에너지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에너지이용의 합리적인 시책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장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효율관리기자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의 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건물 관련 시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자발적인 협약 체결기업의 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에너지진단, 목표에너지단위의 설정등,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폐열의 이용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제1항에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에너지사용자는 폐열이용을 노력규정과 타인이 원할 때에 폐열을 공급하도록 협조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열에 관한 공동이용에 관

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으론 폐열의 이용에 관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법 제76조 벌칙 규정에 동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열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3 절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념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집단에너지”란 다수의 사람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란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i)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ii)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의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란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첫째,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

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둘째,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셋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넷째,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i)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ii)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급구역별 즉 세종,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업허가 기준으로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고, 열과 전기의 공급 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과 자원, 공급구역에 중첩되지 않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열 공급규정의 신고 등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에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제2항에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제3항에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열요금감면, 그 밖의 열공급조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받은 경우에 공급규정 중에서 전기공급에 관련하여 신고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열요금에 대한 상한규정을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으며, 열공급규정을 변경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바로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i) 요금 및 그 계산방법, (ii) 공급하는 열의 온도·압력 기타 공급조건, (iii)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열생산자는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하며, 열생산자나 사업자가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조정신청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즉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열생산자는 열공급조건에 맞추어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신청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명기회 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됴으로써 조정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조정안을 수락을 권고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집단에너지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상의 입법취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또 다시 「전기사업법」상의 제7조제1항의 사업허가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 4 절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1. 입법목적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동법률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다원성 및 안정적인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판단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개념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즉,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로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업자로 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별표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일정량의 에너지사용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강행하기 위하여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의5제2항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²⁸⁾ 이 경우 균형

28) [별표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비율 (%)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12조의5 제5항).

즉 동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는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등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의무자별로 의무량을 정하는데, 총발전량과 발전원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공급의무량을 3년의 범위내에 그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항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 “공급인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유효기간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신·재생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賦存)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제1항에서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0.25	IGCC, 부생가스	

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공급의무자에게 구매되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동법 제12조의7제4항).

또한 동법 제12조의7제5항에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12조의7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규정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인증기관은 에너지종류별 공급량과 기간 등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며, 공급의무자에게 구매되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하며, 공급인증서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어야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에너지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15년
	5.0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6년
4.5	‘17년		

않는 상황하에서 많은 거래 물량과 낮은 가격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의무량, 의무이행 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REC시장 거래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6.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의2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수송용연료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RFS)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를 강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 5 절 소 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적 한계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로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로 “전기사업의 허가제도”를 두어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동일인은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전기요금 및 발전, 송·배전비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제도를 두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의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력판매사업자는 태양광 및 풍력 등의 발전단가가 높아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전력구매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정책으로 효율관리기자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자발적인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에너지진단,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권고 및 조정만으론 폐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로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고,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규정을 통하여 전기공급에 관한 신고의제규정을 돕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열생산자는 열공급조건에 맞추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명기회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도를 분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시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

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수송용연료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RFS)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하였으나, 개별 법률상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적인 규제수단이 입법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에 특히,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한 법정책 및 법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위한 법제도, 전기를 저장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관련 법제도, 스마트미터기 보급관련 법제도,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 4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발전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제 1 절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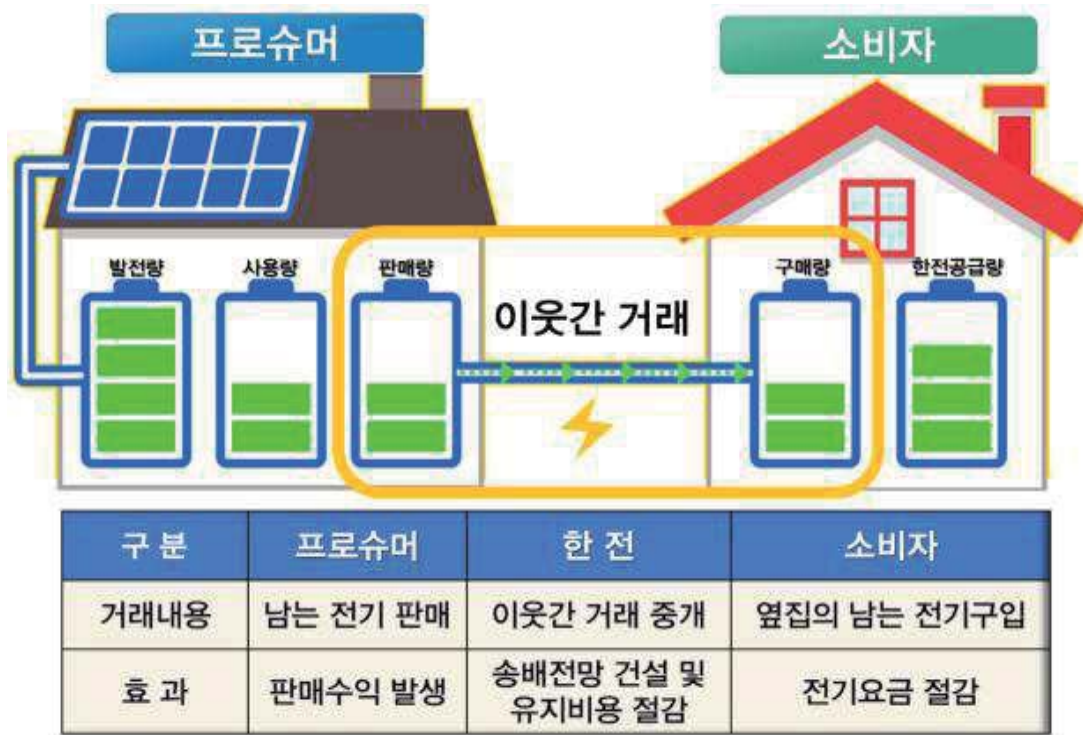
1. 에너지프로슈머의 개념

프로슈머의 개념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로 해석되는 영어단어의 합성어으로써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며³⁰⁾, 이 개념은 1972년 마셜과 맥루언의 “현재를 이해한다”라는 책에서 “전기생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맨 처음 등장하였고,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가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예견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프로슈머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의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프로슈머는 대학빌딩, 산업단지 내 태양광, 개인 주택의 지붕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있는 이웃집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현 초등학교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544세대)간의 에너지프로슈머계약을 체결하였다.³¹⁾

3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960.html(2016. 8.3. 최종)

3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960.html(2016. 8.3. 최종)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³²⁾



2. 현행 「전기사업법」상 “이웃간 전력거래” 가능한지 여부 분석

「전기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32) 2016년 3월 11일자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769330&memberNo=16990721&vType=VERTICAL>

으려는 경우에 미리 제53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전기사업 허가제도 마련한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공익설비이기 때문에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는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첫째,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둘째,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셋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원칙적으로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금지규정”을 예외적으로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사업자,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여 이동을 시키는 송·배전사업자, 이동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로 서로의 영역을 확정함으로써 업역을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에너지프로슈머와 같이 전기사용자, 즉 소비자가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통적인 법해석론에 입각하면, 에너지프로슈머가 발전사업자인지 전기판매사업자인지를 명확하기 구분하여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허가를 받아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i)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도서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등을 통하여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을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인 및 도서지역의 거주자는 생산한 전력을 사용한 뒤에 전기요금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이었고, 생산한 전력이 사용전력보다 많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 병원 및 대형건물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부분을 이웃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新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에너지프로슈머 중 “이웃간 전력거래” 사례 분석

최근 에너지프로슈머 중 이웃간 전력거래로 통하여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³³⁾를 볼 수 있는바, A씨는 3k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A씨는 매월 100kWh의 전기를 100원/kWh(임의설정가격)로 판매한다는 계약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B씨와 체결하였는데, A씨의 이번 달 전기사용량

33) <http://www.nocutnews.co.kr/news/4536132#csidx850e492502b0d1f9611aa66cd153cf6>(2016. 8.3. 최종)

은 약 350kWh인데 하루 3~4시간 꾸준히 태양광발전을 해 한달 동안 300kWh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B씨의 이번 달 전기사용량은 약 400kWh이다.³⁴⁾ A씨는 B씨에게 태양광발전량 100kWh를 판매하고 남은 전력 200kWh를 이용하여 본인의 전기사용량을 충당하고, 나머지 전기사용량 150kWh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지불하였다.³⁵⁾ B씨는 A씨로부터 구매한 태양광발전량 100kWh를 쓰고 300kWh를 전기요금을 냈으며, 실제 전기요금단가를 적용해 A씨와 B씨 간의 전력 거래 후 정산 내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이웃간 거래 사례>³⁶⁾

	직접판매 전(①)	직접판매 후(②)	②-①
A	[한국전력에 지불하는 금액] 350kwh*전기요금단가=62900원	[한국전력에 지불하는 금액] (350-200)kwh*전기요금단가(누진제적용)=15,090원 [B로부터 받는 금액] 100kwh*100원=10,000원 [총 지불금액] 15,090원-10,000원=5,090원	직접판매로 인하여 57,810원 절약
B	[한국전력에 지불하는 금액] 400kwh*전기요금단가=78,850원	[한국전력에 지불하는 금액] (400-100)kwh*전기요금단가(누진제적용)=44,390원 [A에게 지불하는 금액] 100kwh*100원=10,000원 [총 지불금액] 44,390원+10,000원=54,390원	직접판매로 인하여 34,460원 절약

34) <http://www.nocutnews.co.kr/news/4536132#csidx850e492502b0d1f9611aa66cd153cf6>

35) <http://www.nocutnews.co.kr/news/4536132#csidx850e492502b0d1f9611aa66cd153cf6>

36) <http://www.nocutnews.co.kr/news/4536132#csidx850e492502b0d1f9611aa66cd153cf6>

따라서 에너지프로슈머 즉, “이웃간 전력거래”를 통하여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A는 직접 판매로부터 받는 이익금액이 약 57,810원이고, B는 직접 판매로부터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4,460원이라는 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웃간 전력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최근 정부는 학교, 병원 등 대형건물 지붕위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하여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이웃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2-67호, 2012.3.26]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6-122호, 2016.6.30]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u>1천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u>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2-67호, 2012.3.26]</p>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6-122호, 2016.6.30]</p>
<p>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p> <p>2.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3.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이하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4.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p> <p>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p> <p>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p> <p>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p>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2-67호, 2012.3.26]</p>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6-122호, 2016.6.30]</p>
	<p>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팀링엔진을 사용하는 전기발전보일러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p>
<p>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u>총충·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u></p> <p>② 제①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제한 것으로 본다.</p>	<p>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u>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충·방전설비용량이 10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50kW 이하로 한다.</u></p> <p>② 제1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제한 것으로 본다.</p>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2-67호, 2012.3.26]</p>	<p>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6-122호, 2016.6.30]</p>
<p>④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p> <p>⑤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①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① 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중전의 제2항에서 이동></p> <p>⑤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p> <p>⑥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⑦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u><신설></u></p>	<p>제19조(이웃간 거래 등) ①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라 한다)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p> <p>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남는 전력이 있는 태양에너지발</p>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2-67호, 2012.3.26]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16-122호, 2016.6.30]
	<p>전설비 설치자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찾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거래가 가능한 대상의 발전량 또는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④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전기소비자는 전력공급량, 단가(원/kWh), 공급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상호 약정 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정 내용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과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종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 18조제1항에서는“총 총·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 전기저장장

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50kW 이하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을 분석해 보면, 전기설비용량 10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태양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에게 50kW 이하로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상계허용범위를 종래에서는 10kW에서 50kW로 상향조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 19조제1항에서 태양광발전설치자의 경우에 1,000kW 이하로 생산된 전력 중 이를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웃간 전력거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5.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상 “소규모전기공급사업” 개정

최근 2016년 6월 28일에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력신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신산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전력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간에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전력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개정(안) >³⁷⁾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현행과 같음)</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p> <p>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p> <p>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p>

3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K1G6C0S6A2U8F1B7J0M6P3F7Y9V8W3(2016. 8.3. 최종)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2의6.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2의8.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 전력자원”이라 한다)를 모집·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저장장치</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자동차</p>
	<p>제 7 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p>

제 4 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발전 관련 법제 개선 방안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또는 대표자인 법인이 제 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5(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p>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전기 공급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즉,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12의6에 따르면,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전력신사업을 하려는 자 즉,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남은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중개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간에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인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하여 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에 전력거래 및 전력공급 장애 발생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명령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 2 절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실제 화석에너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의 한계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자동차는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를 활용하여서만 움직일 수 있다.³⁸⁾ 이러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미세

38) 그러나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창기에는 도로에 가솔린 엔진자동차와 전기자

먼지 등의 환경오염 문제, 석유 및 석탄에너지 고갈 문제,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증가로 인하여 온대성 기후에서 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게 되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형 자동차 및 해외 자동차가 증가에 따라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新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 중에 전기자동차를 보급 및 확산 정책 개발을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004년 10월 22일에 법률 제7238호로 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가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環境親和的)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³⁹⁾

동차 및 스티프자동차가 한데 어우러져 다녔고, 1900년대 초창기에 미국에서 운행된 자동차의 약 38%가 전기자동차였다고 한다. 그 당시 전기자동차의 결점으로 자동차배터리 성능의 한계로 주행거리가 짧았고, 도로망이 확장되면서 전기자동차의 결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졌고, 내연기관인 가솔린 엔진자동차의 단점인 소음기 및 머플러 등의 결점이 보완되면서 오늘날까지 화석에너지자동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찰스 모리스/ 엄성수(역), 「테슬라 모터스-일론머스크,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을유문화사, 2015), 27-28면.

39)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1840%2c180408%2c149353%2c137025%2c115072%2c113444%2c110978%2c93627%2c93541%2c83934%2c78838%2c73813%2c62519&chrClsCd=010102>(2016. 8.3. 최종)

최근 2016년 1월 27일에 법률 제13871호로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전기자동차의 확산과 보급을 위한 것으로 매년 큰 폭으로 전기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자동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자동차 시대 선점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인 보완과 인센티브 및 세금감면정책을 통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4년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의 0.5퍼센트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이다.⁴¹⁾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40)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1840%2c180408%2c149353%2c137025%2c115072%2c113444%2c110978%2c93627%2c93541%2c83934%2c78838%2c73813%2c62519&chrClsCd=010102>(2016. 8.3. 최종)

41)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1840%2c180408%2c149353%2c137025%2c115072%2c113444%2c110978%2c93627%2c93541%2c83934%2c78838%2c73813%2c62519&chrClsCd=010102>(2016. 8.3. 최종)

42)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1840%2c180408%2c149353%2c137025%2c115072%2c113444%2c110978%2c93627%2c93541%2c83934%2c78838%2c73813%2c62519&chrClsCd=010102>(2016. 8.3. 최종)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장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일정부분에 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전기자동차산업 환경을 선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직결되는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주유소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p>	<p>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p>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p>	<p>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margin-left: 20px;"> <tr> <td style="width: 50%;">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td> <td style="width: 50%;">아. 운동시설</td> </tr> <tr> <td>나. 제2종 근린 생활시설</td> <td>자. 업무시설</td> </tr> <tr> <td>다. 문화 및 집회 시설</td> <td>차. 숙박시설</td> </tr> <tr> <td>라. 판매시설</td> <td>카. 위락시설</td> </tr> <tr> <td>마. 운수시설</td> <td>타. 자동차 관련 시설</td> </tr> <tr> <td>바. 의료시설</td> <td>파. 방송통신시설</td> </tr> <tr> <td>사. 교육연구시설</td> <td>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 시설</td> </tr> </table>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아. 운동시설	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자. 업무시설	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차. 숙박시설	라. 판매시설	카. 위락시설	마. 운수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바. 의료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 시설
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아. 운동시설														
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자. 업무시설														
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차. 숙박시설														
라. 판매시설	카. 위락시설														
마. 운수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바. 의료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 시설														
	<p>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p> <p>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p>														

제 2 절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p> <p>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p> <p>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p> <p>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p>
<p>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광역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500세대 아파트, 기숙사,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의5에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충전시설은 (i)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ii) 완속 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개선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안)”⁴³⁾을 마련하고 있는바, “기존 CNG·LPG충전소, 일반 주유소에도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융·복합충전소가 허용되고, 또한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 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규격에 맞는 방호벽을 갖추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전소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설치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화석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형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최근 정부는 2016년 6월 2일에 기존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병행설치와 관련하여 충전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설비간의 이격거리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방호벽 설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340&bbs_cd_n=27

44)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121108342490622>(2016. 8.3. 최종)

특히 최근 용·복합 패키지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안을 통하여 국내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기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법제개선 방안

(1)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가능 여부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첫째,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둘째,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셋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면서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에

수요관리사업자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자,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그 밖의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하여 전력시장의 효율성 및 지능형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상의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1조제5항에 따른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면, 전기충전사업자는 충전하고 남은 전기를 발전자원으로 송전하고 판매하기 위하여는 발전허가, 송·배전허가, 전력판매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기충전사업자가 수요관리사업자 중에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 포섭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지만, 전기충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인지, 송·배전사업자인지, 전기판매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별할 수 없으며, 전기충전사업자를 수요관리사업 중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주도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의 개정(안)

정부도 新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아울러 다원화된 전기공급자를 영성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전력신사업의 개념속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포섭시키고 있으며, 전기충전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개정(안)>⁴⁵⁾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현행과 같음)</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현행과 같음)</p> <p>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p> <p>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제 7 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4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K1G6C0S6A2U8F1B7J0M6P3F7Y9V8W3(2016. 8.5. 최종)

제 2 절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p>1. 신청인 또는 대표자인 법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4(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31조(전력거래) ① ~ ⑤ (생략)	제31조(전력거래) ① ~ ⑤ (생략) ⑥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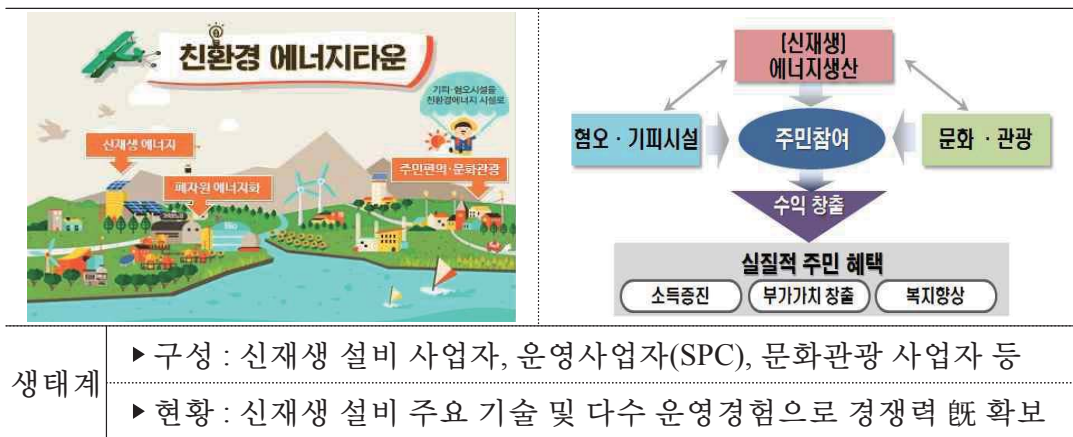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제16조의4의 규정을 보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은 제31조제6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다원화된 전기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하는 방편에로의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

제 3 절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개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이란 기피시설(예: 폐기물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부산물처리장) 및 혐오시설(추모시설, 변전소, 요양시설), 기타 유희시설(폐교부지, 매립지, 폐산업단지)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인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각열, 폐기물에너지 등을 설치 및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장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문화유산 자원 등의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진, 부가가치 창출, 복지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온실가스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⁴⁶⁾

<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개요 >⁴⁷⁾



46)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293&boardMasterId=650&board-CategoryId=2&boardId=442830>; 관계부처합동자료집,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력 -2030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5.11.23), 16면.

47)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293&boardMasterId=650&board-CategoryId=2&boardId=442830>; 관계부처합동자료집,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력 -2030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5.11.23), 16면.

2.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사업유형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사업유형으로 대상시설별로 기존의 기피시설, 비선호시설, 기타 유휴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에너지원별로 대상시설의 옥상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력을 판매하거나, 가축분뇨 등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온수, 열, 가스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별 유형으로 주민에 의한 참여유형으로써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에너지원별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협업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비를 매칭펀드를 통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유형을 말하고, 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형에 일정 주민의 지분을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⁴⁸⁾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시범사업 개요>⁴⁹⁾

지역(주관부처)	사업개요	수익 모델
홍천(환경부) ⁵⁰⁾	▪ 바이오가스 · 퇴비 생산시설 설치	▪ 바이오가스 · 퇴비판매 수입
광주(산업부)	▪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 생산전력 판매
진천(미래부) ⁵¹⁾	▪ 신재생에너지간 융복합 설비 구축	▪ 생산전력 판매, 열 자체사용

출처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12.19.)

48)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L6u9j5OT6AcJ:www.motie.go.kr/common/download.do%3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156844%26file_seq_n%3D76+&cd=13&hl=ko&ct=clnk&gl=kr\(2016.8.10. 최종\)](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L6u9j5OT6AcJ:www.motie.go.kr/common/download.do%3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156844%26file_seq_n%3D76+&cd=13&hl=ko&ct=clnk&gl=kr(2016.8.10. 최종))

49)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4/pdf/issue_77_01.pdf. p. 2.

50) 이처림의 홍천의 경우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을 통하여 평균 1166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도시가스 등의 연간 경제적인 효과가 1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http://news.joins.com/article/19230197>).

51) 충북진천은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95kW), 연료전지(10kW) 등을 설치하여 태양광, 지열, 하수폐열 등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1603/ef1603.pdf>. p.54면.

3.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통한 “전력거래” 가능여부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주민들은 발전사업, 송·배전, 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그 전기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i)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등을 통하여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을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인 및 도서지역의

거주자는 생산한 전력을 사용한 뒤에 전기요금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이었고, 생산한 전력이 사용전력보다 많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부분을 이웃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바이오가스 및 퇴비시설을 통하여 난방요금 등의 절약 등의 수익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자체별로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가에 여부에 대하여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에 거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일부 전력을 이웃 주민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활성화를 법제개선 방안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주민에 의한 참여유형으로 일부 지역주민에 의한 소득증대에 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유형으로 기업과 협업을 통한 국가보조금과 지방비를 매칭펀드를 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주민의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혼합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지원책을 3년에서 5년 또는 7년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하여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은 남은 전력을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에 발생하는 소득부문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모델로 육성함으로써 新 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있음과 아울러 각 지자체들마다 소득증대, 부가가치 창출, 복지향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모델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적으로 정부는 新 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중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는 “(가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확산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사업, 지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수립등,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지정 및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지원센터의 지정,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주민주도형 참여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건축법에 의한 특례,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4 절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향

1.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필요성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는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을 공식 발표하여 “新기후체제”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도국과 선진국들간에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했다는 점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점검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정부도 2015년 6월에 2030년까지 경제성장 및 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다.⁵²⁾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공업분야, 즉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조 및 부품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대기업에 비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52) 이투뉴스, [칼럼] “온실가스감축의 효율적 이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법의 특별한 만남”, 이종영,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7>(2016. 7. 28. 최종)

서 기술적·인적인 역량 및 경제적인 역량이 미흡한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인 불황인 상황, 저유가, 환율 등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 등의 분야에서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도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간에 융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하면서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온실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법규정에 대한 예외규정 및 지원정책 또는 각종 특례 규정을 등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또는 “특례법”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강력한 온실가스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형식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

앞에서도 적시하였지만,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과 관련하여 “일반법” 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특별법” 제정 시안 제시를 통하여 정부에 의한 강력한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으로 제00조 목적규정, 제00조 정의규정, 제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00조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의 등록, 제00조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특례, 제00조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제00조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 제00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만 시안으로만 제시하였다.

향후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제정 시안으로 제시하였던 부분 외에 입법사항으로는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규정,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지정,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건축법에 의한 특례,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체계적인 정당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목 적

안 제00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행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목적조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의규정

안 제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신산업”이란 생산된 에너지 등을 가공하여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전력시장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기자동차유료충전사업,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 에너지자립사업,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를 통한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사업, 발전소 온배수활용사업, 마이크로그리드사업 등을 말한다.
2. “에너지신사업자”란 제1호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에너지관련사업자로서 제00조(에너지신사업자의 등록)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가. 전기자동차유료충전사업
 - 나. 전기자동차배터리 리스사업
 - 다. 에너지자립사업
 - 라.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사업
 - 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 바. 마이크로그리드사업
 - 사.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이란 소규모지역에서 기존의 전력망을 활용하여 IT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4. “에너지중개사업”이란 에너지신사업자로부터 에너지를 개발 또한 모집한 에너지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한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중개사업자”란 에너지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00조(에너지신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나 법률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규정을 하게 된다. 또한 법률상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거나 법률상의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통하여 의미를 구체화하게 된다. 이처럼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사업자”,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에너지중개사업”, “에너지중개사업자” 등에 대한 용어에 관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에너지를 가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기자동차유료충전사업,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 에너지자립사업,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를 통한 도시가스 활용사업, 온배수활용사업을 통하여 에너지공급과 수요관리 사업간, 기술과 산업간의 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에너지신산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유료충전사업, 전기자동차배터리 리스사업,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사업,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에너지자립섬 활용사업, 마이크로그리드사업에 해당하는 에너지관련사업자로서 제00조에 등록된 자를 “에너지신사업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신사업자로부터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모집한 에너지를 전력거래시장에 거래하는 사업을 에너지중개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에너지중개사업자는 에너지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사업자”,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에너지중개사업”, “에너지중개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 법률에

서 허용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입법학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다른 법률 상호간 또는 각 법령상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해소하면서 법률상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축소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동 법률안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종래의 에너지관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로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관계 법령상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

안 제00조 (에너지신산업의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00조 (에너지신산업위원회)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위원회(이하 “에너지신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신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 정책의 추진계획
3. 에너지신산업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육성
4. 에너지신산업 연구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육성
5.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6. 에너지신산업 관련 투자의 확대
7. 에너지신산업 혁신 역량의 강화
8.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9. 에너지신산업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00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에너지신산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정성,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00조 (통계의 조사·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육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신산업을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삼아 구체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해안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및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조정하고 총합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걸맞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업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고,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작성을 통하여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계획, 에너지신산업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육성, 에너지신산업 관련 투자의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에너지신산업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안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의 등록) ① 에너지신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 등록제도를 둔 입법이유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신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원확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두를 대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행정청인 정부는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등록기준, 절차, 방법 및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신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에너지신사업자에게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과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안 제00조(에너지신산업위원회) ① 에너지신산업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신산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에너지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인증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2.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그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관련 규정은 독임제인 행정기관과 달리 의사결정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조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를 하게 된다.

현행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에너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부원장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1월 13일에 법률 제9931호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구)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개정하게 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현재의 “에너지위원회”로 격하되었다. 이처럼 「에너지법」 제10조에서 현재와 같은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련 기본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한 사항,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의 예방과 해소, 원자력발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향후 “에너지위원회”를 “국가에너지위원회”로 격상시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에너지신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부처간의 충돌되는 문제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법」상 “에너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인데,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에너지신산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서 “에너지신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입법취지는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주

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설치와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활성화 관련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 추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의 충돌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신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에너지신산업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지원,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신산업위원회”를 격상시켜 설치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간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시에 부문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특례

안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의 전력 거래 등) ① 에너지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에 거래하거나 이웃에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신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에너지중개사업자를 통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만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제31조제5항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동법 제48조상의 사업허가의 받은 경우에 「전기사업법」상의 발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비용 및 절차의 간소화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웃간 전력거래 및 에너지중개사업자를 통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신사업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안 제00조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설치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에너지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주변지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폐수중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구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피·혐오시설 및 그 주변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에 관한 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00조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사업자가 승인된 조성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00조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이란 기피시설(예: 폐기물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부산물처리장) 및 혐오시설(추모시설, 변전소, 요양시설), 기타 유희시설(폐교부지, 매립지, 폐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인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각열, 폐기물에너지 등을 설치 및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장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문화유산 자원 등의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진, 부가가치 창출,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면서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말한다.⁵³⁾

특히,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기피시설, 혐오시설, 유희시설 등의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친환경

53)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293&boardMasterId=650&board-CategoryId=2&boardId=442830>; 관계부처합동자료집,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력-2030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5.11.23), 16면.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제도의 입법취지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되지 않도록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00조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즉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주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피·혐오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에너지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사업자가 승인된 조성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비용 등에 관한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적시를 하였지만, “(가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사업, 지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지정 및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지원센터의 지정,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건축법에 의한 특례,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

안 제00조 (재원의 조성) ①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의 출연금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시기, 재원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00조 (재원의 사용) 제00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2. 에너지신산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중요 사업

안 제00조 (에너지신산업투자 모태펀드 결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에너지신산업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제00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투자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투자, 금융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재원의 조성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자 및 민간 출연금 등을 통하여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신산업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여유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안 제00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 및 보급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라 한다)에게 주차공간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자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100대 이상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자
4.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전용자동차 구획으로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된 전기자동차 전용구획에 전기자동차외에 주차를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축소하여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국가는 에너지신산업분야에 관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하고, 시장을 만들어 주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후에는 그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로 전환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규정을 마련하게 된 입법이유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경우에 국민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시대의 도래를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부응하면서 미래에 친환경전기자동차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기자동차에 설치된 배터리에 전기를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공주택, 공장 등의 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화를 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 및 보급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

라 부설주차장 설치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100대 이상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자,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화”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보급 촉진하기 위하여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규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가정, 회사, 공장,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구매시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하여 다가올 미래에 에너지신산업분야 중 전기자동차가 화석에너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11) 기타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규정

위에서 적시한 규정에 외에도,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에는 新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규정,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지정,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건축법에 대한 특례,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매각 등에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정부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2015년 6월에 2030년까지 경제성장 및 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즉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다.⁵⁴⁾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공업 분야, 즉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발전 및 육성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에너지신산업분야로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설치,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확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태양광 리스 사업,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통하여 대규모 추종형 발전인 에너지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EU 국가 및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은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신재생 에너지인 분산자원 확대 및 미래 운송산업으로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및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新기후체제 대응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에너지관련 법제, 즉 「전기사업법」, 「에너지이

54) 이투뉴스, [칼럼] “온실가스감축의 효율적 이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법의 특별한 만남”, 이종영,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7>(2016. 7. 28. 최종)

융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설치,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확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등의 에너지신산업분야에 대한 육성을 활성화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관련하여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이웃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였고, 또한 정부 주도로 제출된 「전기사업법」상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에 관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기충전사업에 관한 전기를 再販賣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전기충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인지, 송배전사업자인지, 전기판매사업자인지에 구별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로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신사업”의 개념속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포섭하고 있고,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에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즉 기피시설, 혐오시설, 기타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진, 부가가치 창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로는 불가능하며, 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형에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는 “(가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의 조성사업, 지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지정 및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지원센터의 지정,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에너지신산업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의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통계의 조사 및 작성,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 취소,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지원 등,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법제를 마련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정보통신기반기술(ICT)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하기 위하여 “종래의 일부 「전기사업법」 개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신산업관련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혜진, “호주연립정부 기후변화정책현황 및 평가-2015 INDC 제출안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5-42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15/11.20)

변천석,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확산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 『에너지포커스』2016 봄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16/4)

송용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16-04 (한국경제연구원, 2016/3),

제러미 리프킨/안진환(역), 『3차 산업혁명-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민음사, 2012)

조환익, 『電力投球』(알에이치코리아, 2016)

찰스 모리스/ 엄성수(역), 『테슬라 모터스-일론머스크,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을유문화사, 2015)

토니 세바/박영숙(역), 『에너지혁명 2030』(교보문고, 2016)

2.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nergynewbiz.or.kr/energy/intro/intro>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960.html

http://deu-bonn.mofa.go.kr/korean/eu/deu/policy/energy_water/index.jsp

참 고 문 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K1G6C0S6A2U8F1B7J0M6P3F7_Y9V8W3

<http://m.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65>

<http://news.joins.com/article/1923019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128470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529191>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L6u9j5OT6AcJ:www.motie.go.kr/common/download.do%3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156844%26file_seq_n%3D76+&cd=13&hl=ko&ct=clnk&gl=kr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121108342490622>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0047>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4/pdf/issue_77_01.pdf. p. 2.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34/pdf/issue_116_all.pdf.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1840%2c180-408%2c149353%2c137025%2c115072%2c113444%2c110978%2c93627%2c93541%2c83934%2c78838%2c73813%2c62519&chrClsCd=010102>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293-&boardMasterId=650&boardCategoryId=2&boardId=442830>; 관계

부처합동자료집,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력-2030년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5.11.23.)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340&bbs_cd_n=27

<http://www.nikkan.co.jp/articles/view/00390151>

<http://www.nocutnews.co.kr/news/4536132#csidx850e492502b0d1f9611aa66cd153cf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95>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769330&memberNo=16990721&vType=VERTICAL>